

대구예술대학교 백운생활관 규정

(개정 2012.01.3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7.06.1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4.03.25. 교무위원회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백운생활관(이하 “백운생활관”이라 한다)의 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분 및 소재) 본 생활관을 우리 대학교 구내에 둔다.

제3조 (설치목적) 백운생활관은 사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사생의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의 체험을 통한 유능하고 바람직한 인격도야에 이바지한다.

제4조 (개사시간) 백운생활관은 개사시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,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폐사 할 수 있다.

제5조 (이용제한) 백운생활관의 숙소 및 시설물은 사생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 목적에 분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관장은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 (사생활동) 효율적이며 질서 있고 명량한 공동생활을 꾀하고 상호 학문적 탐구와 인격도야를 위한 사생의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.

제7조 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운영위원회

제8조 (설치) 백운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백운생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각 처장 및 백운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교수 4명, 직원 2명을 구성한다.(개정 2017.06.14.)

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, 간사는 백운생활관 사감으로 한다.(개정 2017.06.14.)

제10조 (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- ② 납부금에 관한 사항
- ③ 백운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④ 삭제(개정 2017.06.14.)

제11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

대행한다.

제 3 장 조직

제12조 (직제) 백운생활관에는 관장과 사감, 부사감 및 약간의 직원을 둔다.

제13조 (직능)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백운생활관 업무를 통할하고, 직원 및 사생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4조 (임명 및 직무)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(2024.03.25.)

제15조 (업무) 백운생활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생활관 지도위원회 사무
- ② 사생 입·퇴사 및 사칙 위반자 처리
- ③ 사내 회계업무
- ④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생활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

제 4 장 입사 및 퇴사

제16조 (입사자격) 백운생활관에 입사 할 수 있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재학생 및 신·편입생으로 한다.

제17조 (재사기간 및 재입사) ① 입사 후 재사기간은 매학기 기준으로 한다.

② 재입사를 하고자하는 사생은 퇴사 후 생활관 사무실에서 정하는 날짜에 재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
제18조 (선발기준) ① 학년별 입사 비율은 신입생을 우선으로 한다.

② 학년별 인원은 관장이 정한다.

③ 선발기준

- 학업성적이 우수한자
- 농·어촌 출신자
- 원거리 거주자
- 국가 유공자 및 장애자
-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관장이 추천한 자를 배정에 의해 선발한다.(개정 2017.06.14.)
(배정기준 시행세칙 참조)

④ 재입사생은 ③항외에 다른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선발한다.

- 과실점, 공헌도 등을 고려한다.
- 관장이 추천한 자

제19조 (선발절차) ① 백운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사생 선발기간 중 입사원서를 사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매학기 종료 15일전에 다음 학기의 입사지원자 모집공고를 하고, 입사지원자의 입사원서를 접수, 심사하여 입사허가통지서를 개인에게 통보한다.

제20조 (입사자격 제한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-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②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(군 및 가사휴학 퇴사자는 제외)
- ③ 전염병 질환자
- ④ 품행이 건전치 못한 자(기숙사 생활이 부적절한 자) (개정 2017.06.14.)
- ⑤ 삭제 (개정 2017.06.14.)

제21조 (등록) 입사통지서를 받는 자는 소정 등록기일내에 제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제22조 (퇴사)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사처리 한다.

- ① 징계처분을 받는 자
- ② 규정 및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(개정 2017.06.14.)
- ③ 납부금 체납자
- ④ 전염병 질환자
- ⑤ 휴학한 자
- ⑥ 이성 친구를 호실에 입실 시킨 자
- ⑦ 기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23조 (퇴사신고) 재사기간의 만료 또는 자의애 의하여 퇴사하거나,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직원의 입회하에 공용비품을 반납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.

제 5 장 경비

제24조 (식사) 식사는 조식을 구내식당에서 의무식으로 하며 생활관내 음식물조리 및 식사시에는 생활수칙에 의해 처벌된다.

제25조 (경비부담) 백운생활관의 기본시설 및 보수 이외의 사생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의 부담으로 한다.

제26조 (납부금) ① 사생은 관리비, 식비를 납부하여야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7.06.14.)

② 삭제 (개정 2017.06.14.)

③ 식비는 별도 관리하며, 퇴사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식비를 차감 후 환불한다.(개정 2017.06.14.)

제27조 (납부시기) 관리비, 식비는 매학기 1회로 하며 그 납부시기는 관장이 정한다.(개정 2017.06.14.)

제28조 (납부금의 용도) ① 삭제 (개정 2017.06.14.)

② 관리비는 운영비, 인건비 및 시설유지, 시설보수, 소모품비로 사용한다.(개정 2017.06.14.)

③ 식비는 조식 이용경비로 사용한다.

제29조 (예산과 결산) 백운생활관의 연간예산은 독립회계로 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

장이 집행하되 매년 결산보고를 총장에게 하여야 한다.

제30조 (회계년도) 백운생활관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6 장 사생자치회

제31조 (자치회) 백운생활관 생활전반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.

제32조 (회칙) 사생자치회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개정된 규정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된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03.25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